

개정법률

지하 공간 침수방지를 위한 수방기준

◇ 개정이유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개정(제15조제2호마목 신설, '12.8.22)으로 지하 공간 침수방지를 위한 수방기준 대상이 지하건축물까지 확대됨에 따라 기준을 맞게 개선

◇ 주요내용

- “지하 공간”의 정의에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건축물’을 포함토록 하고, “침수취약지구” 용어를 「자연재해 대책법 시행령」에 사용한 용어로 대체함.(제1조의1)
- 동 기준 적용 범위에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건축물을 포함토록 함

◇ 신구조문 대비표

지하 공간 침수방지를 위한 수방기준 (소방방재청고시 제2009-31호, 2009.8.24.)	지하 공간 침수방지를 위한 수방기준 (소방방재청고시 제2012-147호, 012.10.18.)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지하공간 침수방지를 위한 수방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7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2호마목에서 소방방재청장에게 위임한 지하 공간의 침수를 방지하기 위한 수방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1(정의) (생략) 1. “지하공간”이라 함은 지하도로, 지하광장, 지하에 설치되는 공동구, 지하도상가, 지하에 설치되는 도시철도 및 철도, 지하에 설치되는 변전소 등을 말한다.	제1조의1(정의) (현행과 같음) 1. “지하 공간”이란 지하도로, 지하광장, 지하에 설치되는 공동구, 지하도상가, 지하에 설치되는 도시철도 및 철도, 지하에 설치되는 변전소,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건축물 등을 말한다.

<p>2. “침수취약지구“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지구를 말한다. 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재해위험지구 중 침수위험지구 및 해일위험지구</p>	<p>2.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제2호마목에 따라 “소방방재청장이 침수 피해가 우려된다고 인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목의 지구를 말한다. 가. 영 제8조에 따른 자연재해위험지구 중 침수위험지구 및 해일위험지구</p>
<p>5. “공동구“라 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동구로써, 전기·가스·수도 등의 공급설비, 통신시설, 하수도시설 등을 공동 수용함으로써 미관의 개선, 도로구조의 보전 및 교통의 원활한 소통 등을 기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물을 말한다.</p>	<p>5. “공동구“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동구로써, 전기·가스·수도 등의 공급설비, 통신시설, 하수도시설 등 지하매설물을 공동 수용함으로써 미관의 개선, 도로구조의 보전 및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지하에 설치하는 시설물을 말한다.</p>
	<p>9.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로써,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등을 말한다.(신설)</p>
<p>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침수취약지구 내에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5조 제2호에 따른 지하도로, 지하광장, 지하에 설치되는 공동구, 지하도상가, 지하에 설치되는 도시철도 및 철도, 지하에 설치되는 변전소를 설치하는 경우 유형별 침수방지를 위한 계획이나 설계시 적용한다.</p>	<p>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소방방재청장이 침수 피해가 우려된다고 인정하는 지역 내에 영 제15조제2호에 따른 지하도로, 지하광장, 지하에 설치되는 공동구, 지하도상가, 지하에 설치되는 도시철도 및 철도, 지하에 설치되는 변전소,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건축물을 설치하는 경우 유형별 침수방지를 위한 계획이나 설계 시 적용한다.</p>
<p>제26조(반지하 주택의 출입구 높이 확보) 저지대에 반지하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출입구 높이는 예상 침수높이 보다 높게 설치하여야 한다.</p>	<p>제26조(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건축물의 출입구 높이 확보) 저지대에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 출입구 높이는 예상 침수높이 보다 높게 설치하여야 한다.</p>